

##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▣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· 후 비교표

- 다 음 -

항목	변경전	변경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3 항	<신설>	<p>12. 클래스 C-P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 에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(신설 2015.07.27.)</p> <p>13. 클래스 C-P2 수익증권: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,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(IRP)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(신설 2015.07.27.)</p> <p>14. 클래스 S-P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종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(신설 2015.07.27.)</p>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1 항	<신설>	<p>10. 클래스 Ce 수익증권</p> <p>11. 클래스 CW 수익증권</p>
제 39 조(보수)3 항	<신설>	<p>(클래스 C-P)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70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5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</p> <p>(신설 2015.07.27)</p> <p>(클래스 C-P2)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50</p>

		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5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 (신설 2015.07.27)</p> <p>(클래스 S-P)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00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5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 (신설 2015.07.27)</p>
제 41 조(환매수수료) 2 항	<p>1. 클래스 A , 클래스 C1, 클래스 C2, 클래스 C3, 클래스 C4, 클래스 C5, 클래스 C-I, 클래스 I, 클래스 S , 클래스 Ce 및 클래스 CW 수익증권</p> <p>가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	<p>1. 클래스 A , 클래스 C1, 클래스 C2, 클래스 C3, 클래스 C4, 클래스 C5, 클래스 C-I, 클래스 I 및 클래스 S, 클래스 Ce 및 클래스 CW 수익증권 (개정 2015.07.01)</p> <p>2. 클래스 C-P , 클래스 C-P2 및 클래스 S-P 수익증권: 없음 (개정 2015.07.27)</p>
제 41 조(환매수수료) 3 항	<p>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다.</p>	<p>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 (클래스 C-P, 클래스 C-P2 및 클래스 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다.</p>